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2023년 회기운영 계획

회기일정

회의일수 7회 99일(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5회 51일)

세부운영 계획

구분	회기		주요안건
	기간	일수	
계	7회	99	
제240회 (임시회)	2. 2.(목) ~ 2. 13.(월)	12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당면안건(조례안 등) 처리
제241회 (임시회)	3. 13.(월) ~ 3. 21.(화)	9	• 당면안건(조례안 등) 처리
제242회 (임시회)	4. 12.(수) ~ 4. 21.(금)	10	• 당면안건(조례안 등) 처리
제243회 (제1차 정례회)	6. 12.(월) ~ 6. 26.(월)	15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당면안건(추경예산안 등) 처리
제244회 (임시회)	9. 6.(수) ~ 9. 15.(금)	10	• 당면안건(조례안 등) 처리
제245회 (임시회)	10. 11.(수) ~ 10. 20.(금)	10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 당면안건(조례안 등) 처리
제246회 (제2차 정례회)	11. 20.(월) ~ 12. 22.(금)	33	•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 202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 당면안건(조례안 등) 처리

※ 규정질문은 필요시 매회기 운영

※ 본 계획은 의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최



서구의회는 지난 2월 2일(목)부터 2월 13일(월)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 청취,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심사 등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최종 승인·의결하고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

-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 청취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방청 절차

방청 신청 ⇒ 방청 허가 ⇒ 방청권 교부 ⇒ 의회 방청
의회사무국 ☎053-663-2061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대표발의자 김종일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주민들의 참여와 관람객, 주변 보행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여 다양하고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대표발의자 이금태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한부모가족의 한 유형인 미혼모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세분화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자 백일권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주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보행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대표발의자 이주한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용어 및 문장 등을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다듬음으로써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회용어 알기

발의·제출·제안·제의

- **발의** 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출** 집행기관이 의안을 낼 때
- **제안**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 **제의** 의장이 의안을 낼 때

더 자세한 사항은
서구의회 홈페이지(www.dgscounci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알려주는 생활 속 이야기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장사꾼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외치고 있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싸게 팝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골목을 메웠다. 그 가운데는 랍비들도 몇 사람 있었다. “내게 파시오. 나도 사겠소. 값은 후하게 주겠소.”하고 여기저기서 다투어 사람들이 외쳐댔다. 그러자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진실로 참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조심해 쓰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조심하랴’를 조심해야 할 사항 중에 으뜸으로 여긴다.